

제주지방법원 2020. 7. 1 선고 2019나10743(본소), 2019나10750(반소) 판결 [지체보상금청구의 소(본소), 공사대금(반소)]

재판경과

제주지방법원 2020. 7. 1 선고 2019나10743, 2019나10750(반소) 판결

제주지방법원 2019. 2. 11 선고 2015가단11006(본소) 판결

전 문

원고(반소피고), 항소인 겸 피항소인

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주로펌

담당변호사 김도완

피고(반소원고), 피항소인 겸 항소인

주식회사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근

변론 종결 2020. 6. 3

판결선 고 2020. 7. 1

제1심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9. 2. 11. 선고 2015가단11006(본소), 2015가단 55860(반소)

판결

주 문

1. 원고(반소피고)와 피고(반소원고)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본소청구취지 : 피고(반소원고,이하 '피고'라 한다)는 원고(반소피고,이하 '원고'라 한다)에게 199,000,000원과 이에 대한 2015. 9. 1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6%의,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항소취지 :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.

피고는 원고에게 97,475,427원과이에 대한 2015. 9. 1.부터 2019. 2. 11.까지는 연 6%의,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반 소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

원고는 피고에게 92,645,790원 및 그 중 49,000,000원에 대하여2015. 8. 2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8%의 비율에 의한,43,645,79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

2. 결론

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재판장 판사 조병대 판사 문종철 판사 류호중